

#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특별대책

<환경부 폐자원관리과-498호, '2020.1.28.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알람' 첨부문건>

## ①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거·처리

### 【 발생 및 보관 】

- (전용용기)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(병원내 이동 최소화)하고 밀폐(전용봉투+전용용기 2중 밀폐)
  - ※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
- (보관)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, 병원 내 보관 최소화
  - 병원내 보관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
  -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(4℃ 이하)에 반드시 보관하고, 부패 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
  -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,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

### 【 수집·운반 】

-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
-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℃ 이하 유지, 적재함 사용시 마다 약물소독

### 【 소각처리 】

-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
  - ※ 처리 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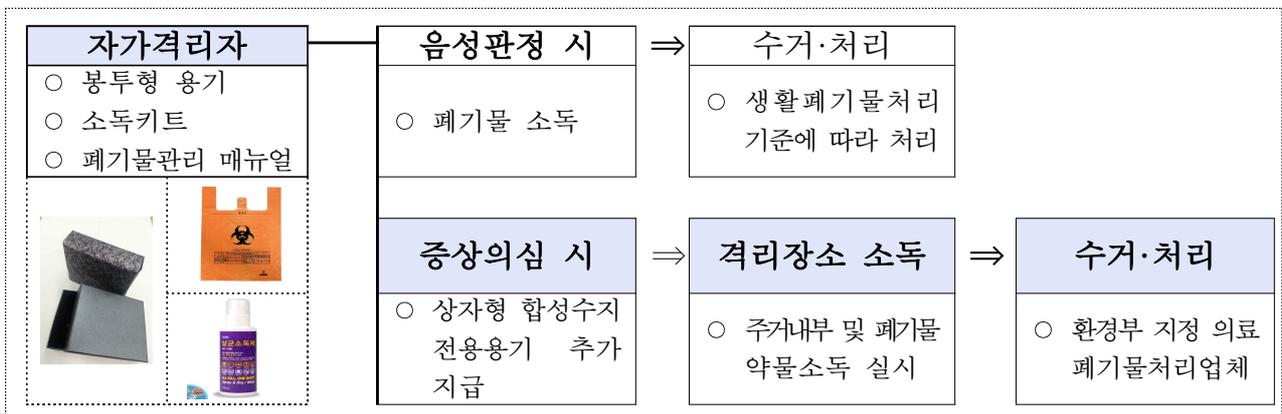
### 【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강화 내용 비교 】

구분	배출자 보관	운 반	처 리
격리폐기물 현행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7일까지 보관</li> <li>○ 합성수지 전용용기</li> <li>○ 전용 보관창고(조직물류 냉장보관)</li> <li>○ 보관창고 소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냉장운반</li> <li>○ 임시보관(2일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처리기한 2일</li> <li>○ 전용보관 창고(조직물류 냉장보관)</li> </ul>
격리폐기물 관리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일 위탁처리(1~2일 이내 보관)</li> <li>○ 냉장보관 원칙</li> <li>○ 전용용기 투입전 후 소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</li> <li>○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일 소각처리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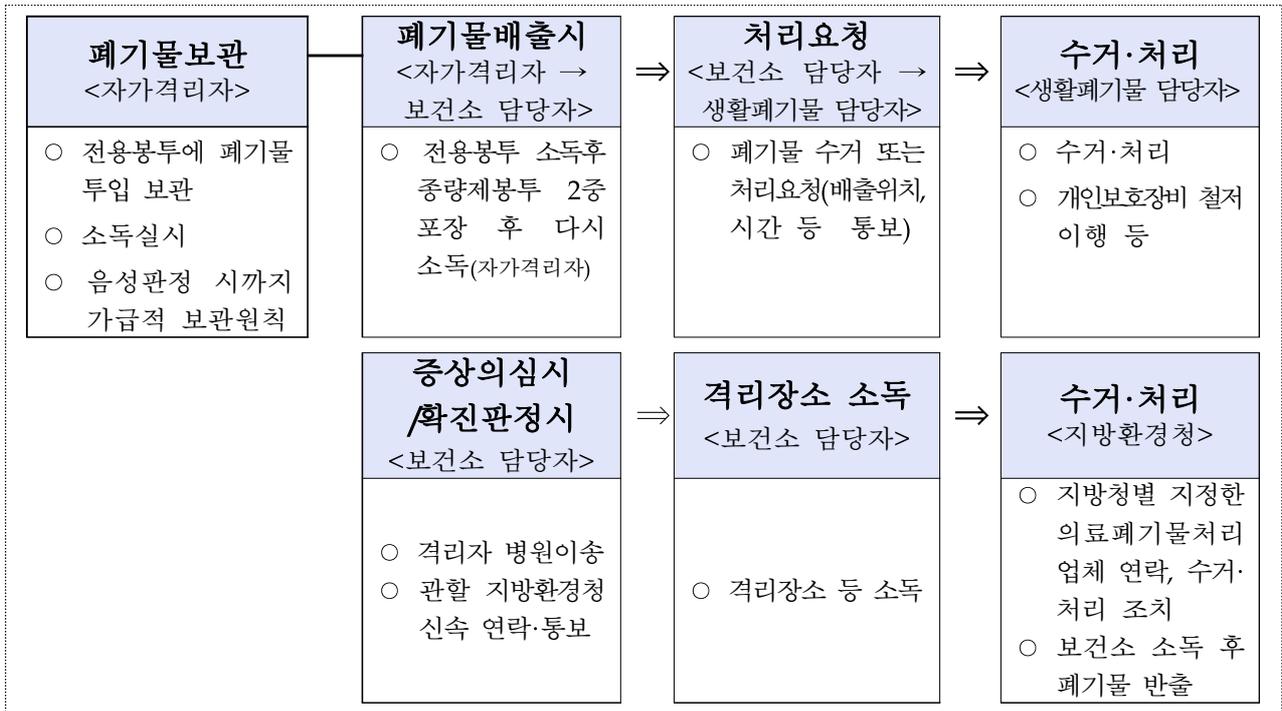
## ②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

- 자가격리자에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\*을 무상지급
  - 유역·지방환경청은 시·군·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,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
    - \* 국민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물용 포장용기에 담아 kit 형태로 보급
-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및 배출요령에 관한 매뉴얼\* 보급(붙임3)
  - \* 소독방법, 폐기물 투입 및 보관·처리방법, 확정판정 시 협조요청 사항 등
- 발생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·처리
  - ①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
    - (배 출)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
      - ※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
    - (수거·처리)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·군·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(생활폐기물 처리업체)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
  -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
    - (배 출)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반드시 보관
    - (수거·처리) 유역·지방 환경청은 시·군·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정하고, 처리업체에서는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
      - ※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(음성 판정)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 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처리

### <자가격리자 지원체계>



### <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·처리 체계>



### 3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

- (폐기물 종사자) 의료폐기물 지도·단속 요원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기물 수집·운반, 처리업체 종사자는 **개인보호장비\*** 철저 사용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
  - \* 개인 소독약품, 마스크, 보호안경,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으로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보호장비 착용
- (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)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' 의심환자 등의 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(시·도)
- (운송사고 예방)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 소독 강화, 안전운행 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(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)
- (특별점검) 기관장 전담제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
  - 병원 등 배출자 : 유역·지방환경청(필요시 시·도 합동점검)
  - 수집·운반업체, 소각처리업체 : 유역·지방환경청 1:1 전담 관리

#### 4 행정지원 대책

- [신속처리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, 사후에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처리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기물 발생 → 관할 환경청 처리전화신고 → 수집·운반 및 당일처리(기존 계약업체) → 환경청 및 시·군·구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원

- 폐기물처리업체 변경시, 선 변경 후 행정처리 허용

- [환경부] 의료폐기물 총괄 상황관리

- 당일 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관련 병원·처리업체 간 이견 중재, 병원휴업 시 폐기물 수거·처리 대책 등

- [시·도] 특별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·시행

- 시·도 관할 여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료폐기물 종사자 등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 대책 강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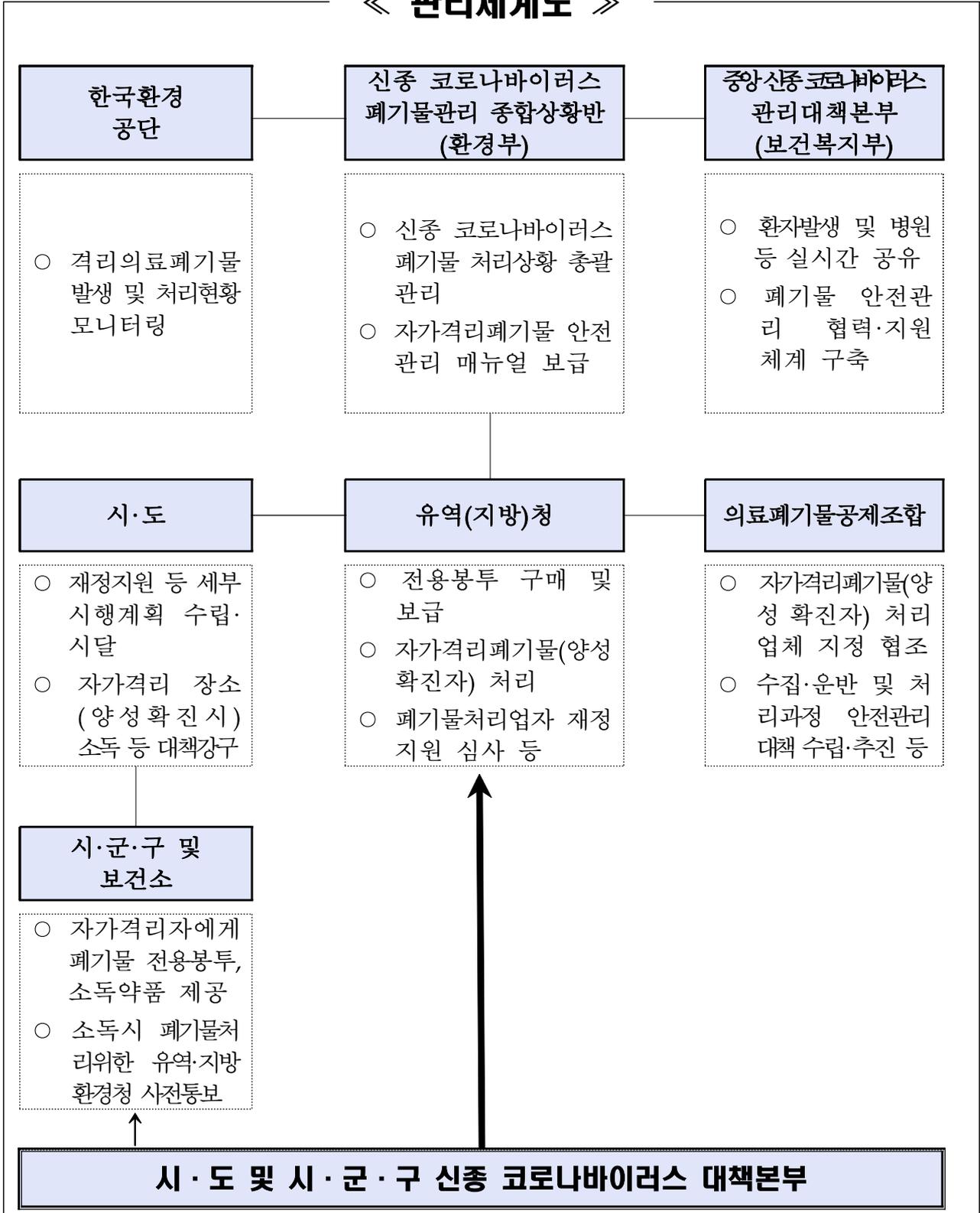
- 자가격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 폐기물을 배출 요청·접수 시 시·군·구 생활폐기물 담당자에게 통보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 신고접수시 보건소에서 소독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에 사전 통보토록 조치하고 합동으로 대응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·확진 환자 이송에 따른 119 구급대 등의 의료폐기물 소독 및 처리 지원대책 강구

- [한국환경공단] 올바른시스템을 통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, 처리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

《 관리체계도 》



## 붙임2

##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

### □ 의료폐기물 전용용기

	
<p>의료폐기물 전용봉투</p>	<p>합성수지 전용용기</p>

### □ 개인보호장비

<p>장갑 가운/앞치마</p>	
<p>마스크</p>	
<p>고글/안면보호대</p>	

**①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**

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.

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%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,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시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
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의 배출을 자제하되, 불가피하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,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고,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**②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'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**

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, ①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.

**붙임4**

**환경부 및 환경청 비상연락망**

관할기관	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
환경부		폐자원관리과	권병철(과장)	044-201-7360
			김유경	044-201-7367
			문세흠	044-201-7363
			오영균	044-201-7370
			김정민	044-201-7362
환경청	한강청	환경관리과	이성철(과장)	031-790-2802
			윤희종	031-790-2806
			허연희	031-790-2812
	낙동강청	환경관리과	정종호(과장)	055-211-1610
			김치훈	055-211-1616
			최정민	055-211-1626
	금강청	환경관리과	손중훈(과장)	042-865-0730
			문제근	042-865-0738
			김다애	042-865-0725
	영산강청	환경관리과	정종범(과장)	062-410-5210
			박민윤	062-410-5202
			김수영	062-410-5215
	원주청	환경관리과	김효영(과장)	033-760-6041
			이한은	033-760-6042
			김슬기	033-760-6047
	대구청	환경관리과	임경희(과장)	053-230-6430
			오경석	053-230-6435
			김도윤	053-230-6438
	전북청	환경관리과	한상윤(과장)	063-270-8831
			장현영	063-238-8842
			정대훈	063-238-8843